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2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주호영 · 박정하 · 김예지
서명옥 · 이달희 · 김기웅
김상훈 · 김승수 · 서범수
김은혜 · 김성원 · 이종욱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

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례) 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u> <u>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⑥ (현행 제126조의 제5항과 같 음)